

2017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과 인권, 그리고 현재

◎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0:30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대전YMCA..

“꿈꾸는 젊은이,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의 비전슬로건을 실현하는 대전YMCA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생명, 평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는 기독교, 청소년, 시민단체입니다.

대전YMCA 목적문

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4월 25일 제 23차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전국대회에서 채택
2014년 6월 21일 제42차 전국대회 및 총회에서 개정

대전YMCA 주요활동

- 청소년YMCA 동아리 운영
- 전국수련회(동령회), 권역수련회(하령회) 개최
-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지원과 특기적성교육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 청소년 18세 참정권 실현운동
-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활동
- 대학생 경제금융봉사단 “플라리스” 운영
-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경제금융교육 운영
- 학교부적응 청소년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캠프 - 국제캠프, 재외동포청소년초청캠프, 로컬운동캠프, 환경캠프

프/로/그/램/PROGRAM

- 청소년 인권, 그리고 현재

[등록 10:30 - 11:00]

[열림 11:00 - 11:05] 개회사_김 종 남
(대전YMCA 사무총장)

[강의 11:05 - 12:35] 상식이 통하는 학교_ 허창영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점심식사 12:35 - 13:05]

[토론 13:05 - 14:05]

월드카페 1. 학교 안에서의 인권

2. 교사의 권위란 무엇인가?

3. 벌점왕자 vs 상점거지

정책제안 1. 인권이다. vs 인권이 아니다.

2. 내가 교장선생님 이라면?

[모으기 14:05 - 14:25] 종합정리

[달함 14:25 - 14:30]

인권, 상식이 통하는 학교 꿈꾸기

어 상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인권,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꿈꾸기¹⁾

허 창 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학생인권조례²⁾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사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광주가 가장 먼저였다. 2006년 당시 교육위원이던 현 장취국 광주시교육감과 몇몇 뜻 있는 교사들이 함께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른 교육위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야만 했다. 다시 2009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역시나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2010년에 경기도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학생인권에 관심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인 2011년에서야 드디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기쁨을 맛본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였으니 이제 2년여가 흘렀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민주인권교육센터’가 만들어졌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총원했다. 나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인권 구제업무 담당으로 교육청에 발을 디게 된 것이다. 처음 구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는 약간의 판단착오도 있었다. 사안에 대해 엄격한 인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판단자’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조치 이후에도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얼굴을 보며 생활해야 하는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도 다르고, 수형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과도 다르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학생인권 문제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사안에 대한 조치

1) 이 글은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교사, 선생이 된다」(2014, 살림터)에 실렸던 원고임을 밝힌다.

2) 정식명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후 문제적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거하고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이후에 무리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가끔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만 조정자의 역할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필자가 학생인권 구제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일 뿐 일반화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학생인권 구제업무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학교의 모습이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일 수 없고, 이것만 고치면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 문제들만이라도 극복한다면 적어도 상식은 통하는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학생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만이라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대와 전근대의 애매한 공존

학생인권 구제업무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다. 그 답답함은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부분 전근대적이라는 데 있다. 물론 학교는 많이 변해왔고, 또 많이 변해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왜곡된 권위에서 탈피해 스승과 제자가 스스럼없이 뒹구는 모습이 늘고 있다.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새로운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입시제도의 굳건함 속에서도 다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교사와 학교도 눈에 띈다. 이들에게 보내는 박수갈채가 아깝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상당수는 ‘권위’를 바탕으로 한다. 가르침은 일방적이고, 관계는 수직적이다. 교사는 학생보다 지적 우위임을

입증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앎의 깊이, 사유의 진중함보다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를 부정하거나 알보는 학생은 꼴사납다.

교사의 조언에 시큰둥한 학생은 ‘시건방지다.’는 평가로 정리된다. 또 모든 관계의 기본은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고, 학생이 교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욕설과 욕박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강제하는 권위’로 압도하려는 전근대에 머물러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상당수의 민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교단이 무너진다거나 ‘어따 대고’식의 질서가 학교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런데 사실 교단은 더 낮아져 교실 바닥에 닿아야 하고, 학생과 교사가 같은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들의 교류가 시작된다. 합리적 이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근대를 구성하는 기본이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배우고,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아니던가. 질서를 먼저 배우고, 계급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적절히 처신하도록 하는 것은 근대 속에서 전근대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어쩌면 합리적 이성이 되도록 하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범죄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에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다.

또한 몸을 이용해 통제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몸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라는 것은 근대 이성의 요구이다.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 인간이 가장 먼저 금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중세 암흑기에는 봉건 독재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저 놈을 매우 쳐라.”라는 대감의 명령은 상식의 언어였다. 그렇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근대 국가를 성립하고 난 후에는 봉건 독재에서 허용되었던 매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성을 파괴하는 비인격적인 고통의 부과는 인간을 대상화 또는 수단화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인격체인 인간에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중세라는 야만이 저질렀던 원시적인 폭력에 대해 근대라는 이성이 스스로를 규정한 중요한 원칙인 셈이다. 우리의 법률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

해 몸에 고통을 주는 태형이나 장형 등 ‘신체형’이 사라졌다. 몸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오늘날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폭력이 모두 고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죄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짓값을 물으면 그만이지 다른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형이 일반화 된 것이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도 교도소에 가두는 것 외에 다른 고통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죄인에게도 고통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교육의 현장에서 이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전근대를 벗지 못한 뼈아픈 현대사와 학교

고통을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잔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뼈아픈 현대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현대사는 폭력이 반복되고, 강요되고, 일상화된 기억이 아니었던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폭력, 6·25 전쟁,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정권의 폭압 등 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 앞에 죽어갔고 피를 흘렸다. 그저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웃, 가족들이 폭력의 희생자였다. 그래서 웬만한 폭력은 감수하는 습관이 생겼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국민들과 폭력의 일상에 노출된 국민들이 폭력의 크기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매 맞는 아내와 자식’은 집안일이니 간섭의 영역이 아니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랑의 매’일 뿐이다. 남성의 경우 군대에서의 폭력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남자가 될 수 없다. 사회에서 직장 상사의 폭력적인 언사는 후배를 위한 선배의 충고다. 자식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후임병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웬만한 폭력은 ‘필요악’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몇 대 맞은 것은 맞은 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다. 몸에 생채기가 나고 멍이 남아야 폭력에 길 수 있다. 그것도 목적이 정당하면 어느 정도 이해 가능성이 있다. ‘절대악’이어야 할 폭력에 길들여진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 조희연은 한국현대사가 가진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국가폭력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과 기관, 언론, 보수지식인들과 함께 제도 교육 또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주체였다고 지적하는데, 억압된 사회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무의식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폭력에 대해 침묵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체였으며, ‘학교폭력’³⁾을 통해 적극 활용해왔다. 군대에서의 얼차려 방법인 이른바 ‘원산폭격’ ‘한강철교’를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구둣발과 몽둥이도 학교에서 경험했다. 성희롱과 폭력적인 언사 또한 교육의 방법이였다.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었던 폭력을 그대로 ‘선행학습’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요즘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지칭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거나 잘못된 규정이다. 김동춘은 국가폭력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즉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의 절차 혹은 국민적 토론·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법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폭행·폭언·인신통제·감시, 사상·의사·표현 억제”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학교에 적용해도 똑같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며, 합리적 절차도 없이 교사의 자의에 의한 즉흥적인 심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다른 말로 ‘학교폭력’이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학생 간 폭력’일 뿐이다. 국민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학생 간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학교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처럼 고통을 느끼는 몸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우리사회다. 이러한 방법은 고전주의 시대에 신체를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군대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위해 신체를 길들이는 방법인 것이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고자 했던 방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3) 여기서의 학교폭력은 흔히 학교폭력으로 지목되는 ‘학생 간 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억압적 교육구조, 강요된 학습, 체벌 등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얘기한다.

신체를 길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때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적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을 제한하고 교정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몸을 활용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달주기에 따른 신체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유와 성찰의 방법이어야 한다.

물론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체사레 벅카리아의 “감각적 고통이 도덕적 오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 앞에 설득력을 잃는다. 신체에 감각적 고통을 준다고 해서 도덕적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형벌일 뿐 교육일 수 없다. 더구나 형벌 또한 도덕적 치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학교에는 학생들과의 관계,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 교육적 접근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전근대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는 근대를 넘어 탈근대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자유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우리의 학교는 근대와 전근대가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학생인권 문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류투성이 학교의 규정

<사례 1 - ○○중학교 학교생활규정(안)>

제1조(체벌에 관한 사항) 교사는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체벌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학생에게 잘못된 점에 대해 알린다. 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8장 제1조 제1항 저촉되지 않게 체벌을 받을 수 있다.

①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2.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사례 2 -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53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언어폭력도 포함)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훈육·훈계 등의 방법, 그린마일리지제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벌은 따로 적용한다.

제78조 【훈육의 방법】

- ①교실 뒤로 가서 손들고 서 있기(5분 이내)
- ②옆드려뻥쳐(5분 이내)
- ③방과후에 남겨 교육(①,②항을 3회 이상 지시 받은 경우)
- ④부모님 내교하여 함께 교육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교사를 희화한 별명이다. 이 사건은 마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때에 일어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오장풍 사건’과 같은 희대의 황당사건이 어떻게 교육의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법에서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려고 하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지만 실제 개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행령에 간접체벌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되었다. 즉, 오히려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만들어졌을 뿐,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 셈이 됐다. ‘훈육·훈계 등’

이 곧바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간접체벌이 가능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물론 광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조항이 모두 사라졌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상위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버젓이 명시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항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도 심심치 않다. <사례 2>에서와 같이 육체적 단련을 ‘훈육’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훈육은 통상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육체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곡해해 신체적 단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허용된 체벌이 생각의자에 앉아 있는 것인 덴마크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흘러나온 쓰레기를 학생이 치우게 하는 체벌을 줄 것인가의 여부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던 것과 비교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 손을 들고 잠깐 서 있거나 ‘옆드려뻘쳐’를 하는 것은 훈육에 지나지 않고, 이를 학교 규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학교 규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부장적 문화를 강요하는 내용도 발견된다.

<사례 3 - ○○여자고등학교 생활규칙 중 용의규정 내용>

- 치마 교복이 원칙임. 바지 교복 금지(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허용)

여성은 ‘치마가 어울린다.’느니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가부장 사회의 산물이거나 왜곡된 성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2003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2013년 초에는 항공사 여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입도록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연히 여학생에게도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치마 길이를 놓고 교사들과 줄다리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치마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 항변했다. 세상에 여학생에게 치마만을 입도록 하는 것이 전통이라니, 이는 가부장 문화를 학교의 문화라고 스스로 밝혔거나 상위 규정은 전통이라는 말로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두발을 스포츠형으로 하는 것도 전통일 수 있고,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도 전통일 수 있다. ‘차별’이라는 모욕적인 지적 앞에서도 ‘전통’이라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분을 얘기하는 학교의 당당함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도 이 학교는 교복 바지를 전혀 입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단서를 첨부하면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가관이 다. 그러면 교복 바지를 입은 여학생은 모두 뭘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꼴이다. 그런데 누가 쉽사리 교복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사례 4 - 생활규정 중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징계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함
- 성적, 담임교사의 추천, 출결상황,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등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많은 학교들에서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성적이나 출결상황, 담임교사의 추천을 전제로 하는 제한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학교에서 ‘리더로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는 포괄적인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임원은 어느 정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을 누가 정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물론 과거처럼 학교가 임원을 지명할 때에는 학교 측이 마련한 어떤 기준과 해석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의 임원은 대부분 선거권자인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 스스로 리더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도록 맡기면 그만 아닌가. 이를 학교 규정에 명시해 결과적으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학

생자치활동을 위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격 제한 규정도 문제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고 있거나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징계를 받으면 그 어떤 임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은 학생도 범죄자는 아니다. 그저 일시적인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학생에게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물며 형벌을 받은 범죄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직에 나가거나 정치지도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 또 사면제도가 있어서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훨씬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는 공직과 정치지도자도 이러한데 학교 임원의 자격을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입후보 자격 제한을 극히 한정하고 있다. 1학년 때 교내봉사라는 징계의 가장 낮은 단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치다. 심지어 우리의 학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제도와 같이 징계 기록을 삭제해주는 기회도 없지 않은가. 적어도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 통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규정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임의성과 자의성

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규정에 따라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생지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법치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학교라는 공간이 통치의 공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한 우리의 상황에서 일정한 통치가 존재한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규정에 근거해서 학생지도를 하라는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이후 일상의 요구이다.

그런데 ‘법치’는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법치는 권력이 작동하는 근거를 법에 두어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양시앙레짐(구체제)이나 ‘짐이 곧 법’이라는 황포로부터 일종의 방어막인 셈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왕(권력)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발 법에 근거해서 하라.”인 셈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생활규정을 인권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법치를 학교에 적용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물론 법대로 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치가 법치보다 훨씬 합리적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인치는 늘 임의성과 자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불안을 느낀다.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법치를 통해 인치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또 법을 도구화하는 법률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거나 악법도 법이라는 시각은 곤란하다. 이러한 시각은 법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무조건적 준법의 강요는 법치가 아니다.

<사례 5 - ○○중학교>

- 담임교사가 학기 초 학생들과 학급회의를 통해 지각, 타반 교실 출입 등에 대해 운동장 5바퀴를 돌기로 합의했음
- 날씨가 더워지자 학생들이 벌의 방식을 변경하기를 요구했고, 교사가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로 결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벌을 부여했는데, 한 학생의 경우 복창소리 불량으로 추가 부여해 총 200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음

<사례 6 - ○○중학교>

- 담임교사가 학기 초 학급규칙에 무단지각, 결과, 조퇴, 결석, 동료들과의 다툼 등에 대해 손바닥 때리기(보약, 혈액순환제 투여라는 표현을 씀), 교실에 침이나 땀을 뺀 경우 벌금 1,000원(발견학생에게 지급), 과자를 먹을 경우 다음날 인원수만큼 사오기 등의 내용을 포함해 서약서 형태로 학부모 동의를 구하려고 추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라는 말에 그토록 반감을 가지면서 정작 교사들은 학급에서 또는 교과시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임의적 지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그런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지나치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에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대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냐?”라고 묻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 해.”라는 식이다. 교사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은 교사의 일방적 의견이 ‘관철’되는 방식이고, 학생들끼리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준이 교사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말할 나위 없다. 물론 각자 나름의 교육방법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학교규정이 있어도 이를 교사가 무시하고 규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임의적 학급규칙이나 교과규칙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지도하라는 의미를 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의도로 규정을 도구화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사례 5, 6>과 같이 학생의 규정 위반에 대해 벌을 주면서 교사가 학교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순도 심심치 않다. 아직 학교에서 제대로 된 법치를 기대하기는 이른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학생인권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학교에서 법치를 실현하자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전근대를 제거하자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억압적 권위를 탈피하고, 법치를 통해 합리적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치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법치가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정에 근거해서’는 학교 당국과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만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계적 법 적용을 우리는 ‘법률주의’라고 하지 법치하고 하지 않는다. 시민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법률적 일탈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

가 아니라는 것이다.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목적과 의의를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법치이기 때문이다.

규정과 현실의 괴리

<사례 7 -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학부모 동의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생에게 부모의 동의서까지 서명하게 하는 사례,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를 직접 설득하는 사례, 동의가 아니라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등 규정을 위반하는 학교 방침을 다수가 운영하고 있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광주의 학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학교의 규정을 개정했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 권고한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 예시안’을 반영하려 노력했다. 학생인권과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체벌, 복장, 두발, 전자기기, 소지품 검사 등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대부분 긍정적으로 개정되었다.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 규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청 방침에 따라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식적’일 뿐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전혀 다른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와 교육청 방침에 따르면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자율적인 학습’이 되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이 교과수업을 이어가는 보충학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동의절차를 진행하고는 있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는가이다. 1학년 초에 받은 동의서를 3학년이 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학교, 문서로 확인하지 않고 그것

도 학생들에게만 구두로 묻는 학교, 동의서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호자 서명까지 학생에게 하도록 하는 학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를 집요하게 설득해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 등 각양각색의 탈법 양상을 보인다.

그나마 보호자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것은 양반이다. 어찌되었건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니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고, 대학진학이 목표였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때로는 대학진학을 위해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1학년 초에 동의서를 받은 것을 3학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발상이다. 한 번 디디면 헤어날 수 없는 늪도 아닌데,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구두로만 묻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힘의 무게 차이가 확연한 우리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학생들을 향해 “자율학습하고 방과후 빠질 사람 손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저요”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학급규칙이나 수업규칙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을 놓고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보호자 서명까지 하도록 해 걷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육의 공간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고, 조작해도 된다는 비교육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셈이 된다. 비약하자면 학생들에게 탈법을 자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경험한 학생들이 후에 문서를 작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도 고작 자율학습에 참여시키겠다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8 - 두발 및 전자기기>

- 학교 규정에서는 두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1학년 부장교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여하는 등 규정과 어긋나는 지도를 하고 있음
- 전자기기 역시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

이 금지되어 있을 뿐인데,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음

다음으로, 두발과 전자기기와 관련한 규정도 비슷하다. <사례 8>과 같이 규정에는 두발과 전자지기 소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두발지도⁴⁾를 하거나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벌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그 규정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그런데 학교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현령비현령’도 아니고 학생은 위반하면 안 되고, 학교 또는 교사는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규정은 공적인 약속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사적인 약속보다도 그 구속력이 훨씬 강하고 책임도 크다. 따라서 정당한 내용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규정으로 정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그 규정을 집행하는 학교 당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규정도 지키지 않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권에 대한 오해

학생인권 구제업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바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교권이 바닥이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들다고 한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몰려와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더 이상 교육을 할 맛도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정말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것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적 열의 자체를 갖지 못한다면 학교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합리적인 교육방법론을 가지고 있

4) 물론 요즘의 두발지도는 이전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학교의 규정과 지도의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들은 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며,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어도 교사가 ‘가르칠 맛’을 느끼지 못하면 ‘말짱 황’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교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인권을 잘못 이해해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지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부모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오해해 학교를 싸잡아 비난만 한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⁵⁾고 볼멘소리를 하기 일쑤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 역시 교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대부분 추상적인 교권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할 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흔히 얘기되는 교권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교사의 교육권’으로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업권, 평가권, 지도권(생활교육권), 연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학교 이외의 세력, 학부모집단, 나아가 교육행정당국을 포함한 집단에 대해서는 방어권적 성격이 있고, 학생에게는 일정한 권한으로써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권한인 셈이다. 하지만 이 교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권리로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 이러한 권리와 권한을 준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된 것이다. 법률으로써의 교권은 어디까지나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인권’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이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이 있다. 인권이 있으니 이를 누리고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 교사의 인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학생인권은 학생에게만 있는 권리고,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에게만 있는 권리인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말했듯이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다. 학생에게만 장애인에게만 있는 인권이 없듯이 교사에게만 있는 인권은 있을 수 없다. 다만,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적 상황 때문에 있는 인권문제가 있는

5)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권리는 ‘무엇을 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무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권리는 그 자체로 권리일 뿐이다. 다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거나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따를 뿐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의무’와 ‘책임’은 비슷한 말이지만 전제인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것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인권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학생인권 또는 장애인 인권이라고 부른다.⁶⁾ 마찬가지로 교사의 인권은 교사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권 전반,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인격권(존엄할 권리) 등이다.

마지막 하나는 ‘교사의 권위’로 교사라는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해서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인정되는 것인가. 권위주의를 내세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성되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폭력과 억압을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얼굴과 다르지 않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거나 그 권위가 법류로써 곧바로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교원이 권위를 갖고 학생들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이 권위에 복종⁷⁾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흔히 얘기되는 교권은 이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 일반적으로 교권은 인권과 권위를 제외한 ‘교사의 교육권’을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인권은 교육권과 달리 헌법적 지위에 있고, 권위는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교권, 인권, 권위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적 권리인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학생이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 반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

6)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문화권, 자치 및 참여권 등을 들 수 있고, 장애인은 이동권,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7)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교육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다. 때때로 교사들이 이 둘의 관계를 혼동한다.

라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간섭했다면 교권침해지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 역시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교권침해와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 인권을 교권침해라는 법률적 지위로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지금의 교육구조 속에서는 교권이 존중되기 어렵다. 경쟁과 일등주의의 강요에 침묵하고, 학생들을 억압하는 교육행정에 동조하며, 교육자로서 자주적인 교육을 포기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권위 역시 형성되기 어렵다. 교권과 권위가 인정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교 구조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 존중을 통해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소통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간 대립 구조가 해소되고 나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교권과 권위에 대한 주장은 학생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육행정당국과 부당한 교육제도를 향해 행사되어야 한다. 자주적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교육활동의 기능인으로 전락한 교사에게 권위는 있을 수 없다. 왜곡된 교육구조를 해소하지 않고 모순의 현실에 안주하는 한 교권과 권위는 포장될 수는 있어도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교사는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들 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찾고 있다. 자신들을 순응하는 객체로 전락시킨 구조에 대한 반격은 준비하지 않고 손쉬운 상대에게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태도는 학교폭력이라고 불리는 ‘학생 간 폭력’이 나타나는 양상과도 다르지 않다. 박구용은 학생 간 폭력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억누르고 오로지 입시위주의 경쟁에만 내몰린 결과라고 지적한다. 성적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폭동”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자신보다 상대적 강자인 학교당국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복수의 대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자신의 동료를 선택한다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교사들 역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대상이 교육행정당국을 비롯한 상대적 강자에게도 향하지 못하고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교권회복, 교권보장은 학생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상대적 강자를 향해 주장했을 때 땅에 떨어진 교권과 권위

를 그나마 주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교육적 열정이라는 잘못된 명분

<사례 9 - ○○고등학교>

- 학생들 학업수준이 대체로 낮은 학교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개별지도 내용까지 일일이 적은 성적표를 전달해 확인을 받아오도록 했는데, 3명이 제출하고 20명이 제출하지 않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일 제출하지 않은 20여명을 복도로 불러냈고, 학생들 상황(몸 상태)에 따라 엎드려뺨쳐, 무릎 꿇고 앉기, 서 있기 등을 시켰으며, 이 중 전날에도 문제적 상황을 일으킨 누적된 학생 5-6명에 대해 죽비로 엉덩이를 1-2회 때림

학생인권 구제업무를 하면서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성적과 관련한 것이다. 성적과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은 간단치 않다. 입시정책이 굳건하고 아직도 수도권 대학을 몇 명을 보냈는지가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가 학교입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물론 성적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성적을 무시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성적이라는 녀석이 문제적 상황을 왕왕 만들고 있다.

요즘 학교에서는 옛날처럼 성적으로 ‘몽둥이찜질’을 하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다.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어 온 자식을 보고 위로는커녕 성적표를 찢어 던지고 한 대 더 때리던 학부모도 이제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귀한자식 몸에 손을 댔다고 노발대발하는 학부모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 성적표를 받아 들고 몇 대 맞을지를 계산하며 공포에 떨던 모습도 거의 사라졌다. 교사들 역시 성적을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체벌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성적과 연결되어 있다. 옛날과 같이 무지막지한 체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학력신장을 이유로 체벌을 버리지 못한 교사들이 발견된다. 물론 이 교사들 역시 계속 체벌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매를 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체벌교사’로 낙인찍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사례 10 - ○○고등학교>

- 영어교사가 단어시험 결과를 방학 중에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손바닥을 틀린 개수만큼 60CM 길이의 대나무로 때리는 지도를 했으며, 이에 대한 단기의 효과가 나타나자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개학 이후에도 수행평가와 체벌을 병행함

그런데 가끔은 <사례 10>처럼 ‘교육적 효과’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그 효과의 예로 수업시간의 쪽지시험을 든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러한 효과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영어나 수학교사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어시험이나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쪽지시험으로 치르고, 틀린 개수에 따라 때린다는 공포를 조성하면 일단 잘 외울 것이 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험의 결과가 정말로 학력신장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매를 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을 때가 많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교사들은 모두 매를 듭니까? 잘 나가는 학원의 강사들이 모두 매를 들고 있습니까?”라고 말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사실 매를 드는 것은 그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적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매를 들어 학생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을 포기해놓고 눈가림식 결과에 대해 교육적 효과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열정이 남다른 교사’라며 옹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교육적 열정이 많은 교사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적 열정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학교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성적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정이 많은 교사라 해도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성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학생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학원이 아

닌 학교가 할 일이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할 일이다.

교육은 성적으로만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없다. 성적, 신체적 발달, 자존감,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진로에 대한 욕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인류애 등이 모두 교육의 결과여야 한다. 공교육은 공교육 과정에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 올바른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종합적 행위이다. 이 중 특정의 어떤 것에만 치우쳐 그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면 그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학교는 이런 교사들을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혹 성적이라는 편향된 교육적 열정에만 애를 쓰는 교사가 있다면 차라리 학원을 추천해줄 일이다.

인권, 결국 상식의 문제

“사람이 되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애니메이션 옴니버스 영화 ‘별별이야기 1’의 한 작품 주제이다.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을 배경으로 한 박재동 화백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사람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 부모와 교사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모두 고릴라, 원숭이 등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들이, 혹은 기성세대가 습관처럼 아이들에게 하는 이른바 “사람이 되거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적을 정면에서 비꼬고 있다. 성적표를 던지며 “언제 사람 될래?”라는 부모, 학생을 혼내며 역시나 같은 말을 하는 교사. 학교 교문에 걸린 교훈도 “사람이 되자.”이다. 심지어 사람이 되는 시기도 어른들이 정했다. “대학 가서 사람 되자.”라는 급훈이 잘 말해 준다. 그런 어른들의 강요에 “전 지금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학생들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사람인 학생들을 그저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소박한 요구일 뿐이다. 새로울 것도 없이 이미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에서는 학생 또한 기본권의 엄연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헌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인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두발, 복장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무시해왔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구시대의 논리를 통해

제한을 정당화해왔다. 법률의 오류나 보수적 사법부의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한 치도 의심하지 않고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 속에서 안락함을 누려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입시위주의 경쟁이데올로기에 잠식된 학교,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고 있다. 거기서 교사는 교육의 적극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교육당국의 충실한 기능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비아냥거림도 존재한다. 왜곡된 교육구조를 관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치밀한 작전에 교사들 또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을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조장한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그 구조에 대다수 교사들도 순응하고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학생인권조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학교를 꿈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이 지켜지는 학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지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 사실 인권이라는 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근저에는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상식,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얘기를 잘 들어주자는 상식, 경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상식,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생하자는 상식,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상식, 모두가 상식일 뿐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장 요구하는 수준은 인권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인권의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면 상식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미국 독립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토머스 페인의 책 제목도 <상식>이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그저 상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시각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꼭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더구나 인권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어색해하는 상황에서 고집할 일도 아니다. 다만,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접근과 관계에서 출발해보자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학교 역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상식’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본다.

[참고자료]

학교폭력, 폭력적 구조의 희생양⁸⁾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부터 하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교육)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은 빠져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을 학생들 사이에서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간 폭력은 학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행한 폭력은 학폭법과 연결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비판적 연구자들은 학생폭력만을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큰 학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폭력’이라는 말에서는 그 초점을 국가에 맞추고 있고, 국가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말로 쉽게 이해한다. 국민들 사이에서의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학교폭력에는 학생만 있고 교육 당국과 교사는 없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성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학교의 폭력은 ‘억압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아직도 대학 입시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교육만이 인정받는 우리사회에서 성적은 지상과제이다. 그래서 학교는 성적 이외에는 다른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애쓴다. 그러니 억압과 통제가 따른다. 그 억압과 통제의 방식은 복장·두발 제한, 체벌, 침묵 강요, 자격 제한, 강제적 학습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다양성, 욕망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대학만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만을 선택하도록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학교의 폭력은 출발한다.

이와 달리 학생폭력은 간단치 않다. 개인 간의 폭력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우발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학생폭력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과 별반

8)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간하는 격월간 잡지 「인권」 2014년 9·10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임을 밝힌다.

다르지 않은 것들도 있다. 친구들과 말장난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실수로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런 폭력이야 학생도 사람인 이상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개인으로서의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갖는 위치이다.

학생들은 폭력적 구조의 최하위에 놓여 있는 아주 독보적인 집단이다.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생은 그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사회도 이를 방조하거나 지지하고 있다. 더구나 그 구조 속에서 상대적 강자집단이 될 기회가 전혀 없는 절대적 약자집단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성적 이외에는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절대적 약자이니 결국 자기 인정 통로를 동료집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거대한 학교의 폭력 앞에서 대항해 싸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동료를 향해 집단폭력, 따돌림, 괴롭힘, 스토킹 등의 ‘복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인정 욕구’가 실현되는 것이다. 매 맞는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그래서 학생폭력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게 하는 폭력적 교육(학교폭력)을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해답일 수 있다. 성적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학생을 인정하는 것,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관계 설정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른바 혁신학교에서 학생폭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중요한 판단지점이다. 굳이 폭력이라는 복수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인정 통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이러한 접근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고민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면서 만나는 교육과 학교, 어쩌면 여기에서 학교폭력이건 학생폭력이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부록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박병철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의원 교육위원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박병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6
----------	-----

발의연월일 : 2017. 1. 6.

발 의 자 : 박병철·송대윤·구미경·김동섭

정기현·박상숙·박정현·조원휘

전문학·황인호·윤기식의원(11명)

1. 제안이유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학생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의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학습 및 휴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4) 개성의 실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5) 양심의 자유 및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7) 복지에 관한 권리 사항을 정함.
- 8)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사항을 정함.

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

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음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치원규칙 및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칙등”이라 한다)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칙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증진계획 등

제6조(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민족, 언어,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교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

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학습 및 휴식에 관한 권리

제12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등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휴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개성의 실현,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이 학칙등으로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의 개성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등으로 소지품 검사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칙등으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의 자유 및 의사 표현의 자유

제17조(양심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9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관련한 학칙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의 보장 등 학생자치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제25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제공받을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 절차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원할 권리)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4장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단

제27조(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4.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원 또는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5. 그 밖에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단계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센터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교육의 시행 및 지원
2. 학생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되,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 침해의 구제) 센터는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6조(홍보 및 통신 체계 구축)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제37조(지원 체제 구축) 교육감은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학교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학생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교직원에 대한 학생인권 연수)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자 교육 등)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문조사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전 설문지

1. 토론회를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 ②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 ③ 인권동아리 개설을 위해
- ④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2.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참여하였습니까?

- ①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찾아보았다.
- ② 친구의 소개로
- ③ 부모님의 소개로
- ④ 선생님의 소개로
- 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관심이 생겨서
- ⑥ 학교에 붙은 봉사활동 내용을 보고
- ⑦ 인터넷 봉사활동 사이트를 통해서
- ⑧ 친구가 YMCA에 회원이어서

3. 토론회 내용 중에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상식이 통하는 학교
- ④ 월드카페 - 벌점왕자 vs 상점거지
- ② 월드카페 - 학교 안에서의 인권
- ⑤ 정책제안 - 인권이다 vs 인권이 아니다
- ③ 월드카페 -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인권
- ⑥ 정책제안 - 내가 교장선생님이라면?

4. 인권에 대해 평소 관심은 어느 정도 있나요?

없다 중간 많다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	-----	-----	-----	-----	---	----	----	----	----	-----

5. 평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6. 학교 안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7.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교사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다.
- ②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권력이 있다.
- ③ 교사는 학교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 ④ 기타(_____)

● 사후 설문지

토론회에 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진솔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로 설문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확인 출석을 위해 설문을 마친 후에 뒷면에 봉사활동확인자 인적사항을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이 참여한 토론회의 일정과 내용전반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하였다 () ② 어느 정도 만족하였다 () ③ 보통이었다 ()
 ④ 약간 미흡하였다 () ⑤ 매우 미흡하였다 ()

2. 토론회 내용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상식이 통하는 학교 ④ 월드카페 - 벌점왕자 vs 상점거지
 ② 월드카페 - 학교 안에서의 인권 ⑤ 정책제안 - 인권이다 vs 인권이 아니다
 ③ 월드카페 -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인권 ⑥ 정책제안 - 내가 교장선생님이라면?

3. 토론회를 마치고 인권에 대한 나의 관심정도를 평가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증감하였습니까?(해당하는 점수에 v표 해주세요)

감소 중간 증가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	-----	-----	-----	-----	---	----	----	----	----	-----

4. 토론회를 통해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토론회 운영시 만족스러운 점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뒷장에 계속)

6. 토론회에 참석하고 난 뒤 인권기자단활동을 하고싶다.

- ① 참여하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겠다. ② 참여하고 싶지 않다

7. 여러분이 참여한 토론회의 시설과 운영내용면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 하였는지 세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해 주세요.

활동 운영과 시설의 만족도 측정 항목		5	4	3	2	1
1	우리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2	우리가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무리 없었다.					
3	평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잘 구성 되어 있었다.					
4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5	주제와 세부내용이 잘 맞게 운영되었다.					
6	전체내용에 따른 일정은 적합하였다.					
7	일정은 변경이 없이 주어진 순서에 따라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다.					
8	토론회 내용은 나의 학습수준에 적합하였다.					
9	활동장소의 식사는 적합하였다.					
10	활동 시설 및 장소는 깨끗하고 좋았다.					
11	활동의 시설이나 도구 등은 토론회를 운영하는데 적합하였다.					
12	활동의 활동장내 각종시설은 토론회의 운영에 충분하였다.					
13	토론회의 지도자는 우리를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14	지도자가 토론회를 진행할 때 최선을 다해 열성적으로 지도하였다					
15	토론회의 지도자와 대화 통로는 일관성이 있었고 잘 되었다.					
16	토론회를 전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17	토론회를 향후에 진행하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8	토론회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정확히 작성 후 사후설문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 교		학년 - 반	
이 름		연 락 처	
생년월일			

※ 대전YMCA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수집.이용), 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 연락을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